지식재산처 IP-AX 추진단 · 내부 참고자료

지식재산×AI 글로벌 동향 분석 보고서

IP-AX(지식재산 AI대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IP5 관청 및 주요국 AI·지식재산 정책 비교분석

발행	**지식재산처 IP-AX 추진단**
작성일	**2026-07-13**
분석 대상	**IP×AI 뉴스 아카이브 (ipax-news) 2017–2026, 총 305건**
분석 방법	**아카이브 데이터 + 원문 자료 심층 재탐색**
작성 방식	**AI(Claude) 자동 생성 — 사람의 최종 검수 필요**

본 보고서는 kklique/ipax-news 아카이브(https://kklique.github.io/ipax-news/)의 수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자동 작성했습니다. 원문 자료를 재탐색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대외 배포 전 담당자의 최종 사실 검증을 권장합니다.

목차

1 서론

2 분석 방법론 및 데이터 개요

3 AI 발명자성과 분쟁 동향

3.1 AI 발명자성·특허적격성 동향

3.2 AI 관련 분쟁·소송 동향

4 관청 AI 심사시스템과 심사실무 동향

4.1 관청별 AI 심사도구 배치 현황

4.2 AI 심사실무·가이드라인 정비 동향

5 AI 정책과 데이터자산 보호 동향

6 상표·디자인·출원지원도구 동향

7 미국(USPTO)과 WIPO의 전략

8 유럽·일본·중국(EPO·JPO·CNIPA)의 전략

9 지식재산처(MOIP)와 주요 비교국

10 종합 비교분석 및 시사점

11 지식재산처 IP-AX 전략 제언

12 결론

부록 데이터 및 방법론 노트

CHAPTER 1

서론

2019년 AI 'DABUS'가 세계 최초로 발명자로 이름을 올린 이래, 인공지능은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행정·법제 전반의 최대 변수가 됐다. 이 변화는 세 층위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 ① 관청이 심사·검색 도구로 AI를 도입하는 **공급자로서의 AI**, ② 출원인·대리인이 AI로 출원서를 작성하는 **수요자로서의 AI**, ③ AI 시스템·데이터·발명의 소유·통제를 다투는 **분쟁 대상으로서의 AI**다. 지식재산처의 2025년 승격과 2026년 IP-AX 추진단 출범은 이 세 층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 선제 조치였다.

본 보고서는 IP-AX 추진단의 전략 수립을 위해, 2017~2026년 전 세계 주요 관청·다자기구의 AI 대응 궤적을 분석한다. 뉴스 나열이 아니라 **각 관청의 우선순위, 전략적 선택의 성과와 위험, 지식재산처에 대한 시사점**에 중점을 둔다.

장	내용
2장	데이터·방법론
3~6장	9개 세부주제(발명자성·분쟁, 심사도구·실무, 정책·데이터자산, 상표·디자인·작성지원)
7~9장	IP5+비교국(WIPO·EUIPO·영국·호주) 관청별 전략 비교
10~12장	교차 시사점 · IP-AX 전략 제언 · 결론
부록	데이터 통계 및 방법론상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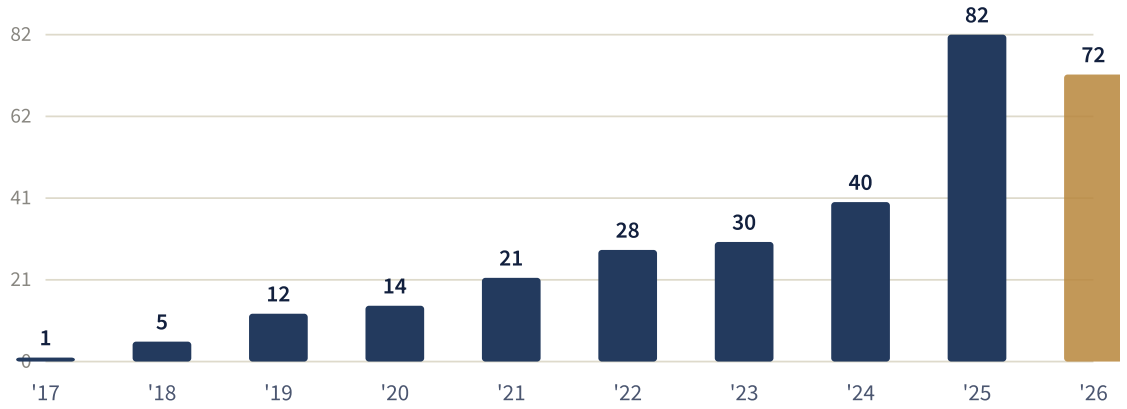
CHAPTER 2

분석 방법론 및 데이터 개요

2.1 데이터 소스

IP×AI 뉴스 아카이브(`ipax-news`, https://kklique.github.io/ipax-news/)의 축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했다. 분석 시점 기준 **총 305건**, 수집 기간은 **2017년 3월~2026년 7월**이다(초기 수년치는 배경 확보를 위한 소급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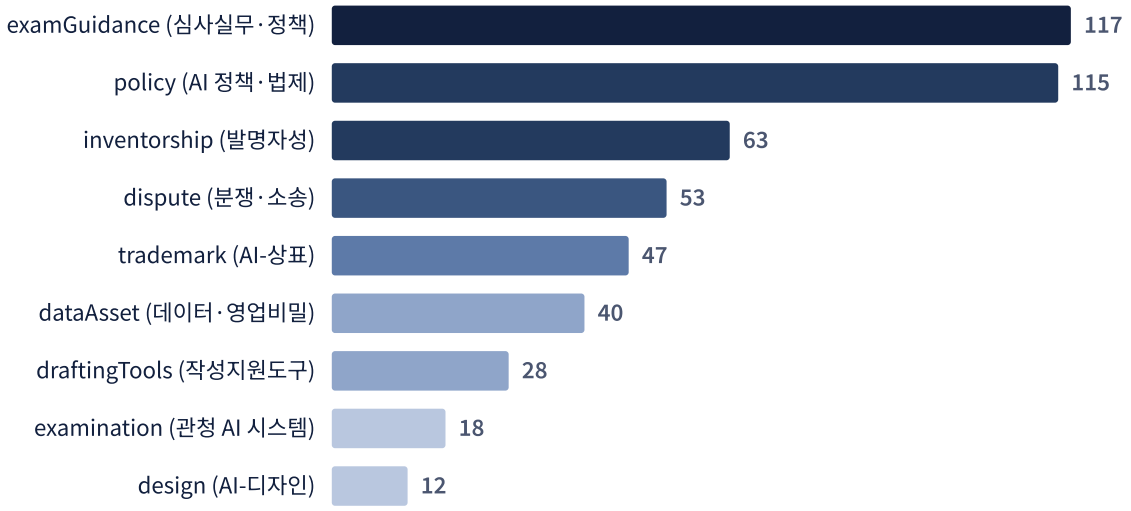
완).



연도별 수집 항목 수 (2026년*은 7월 13일 기준 연중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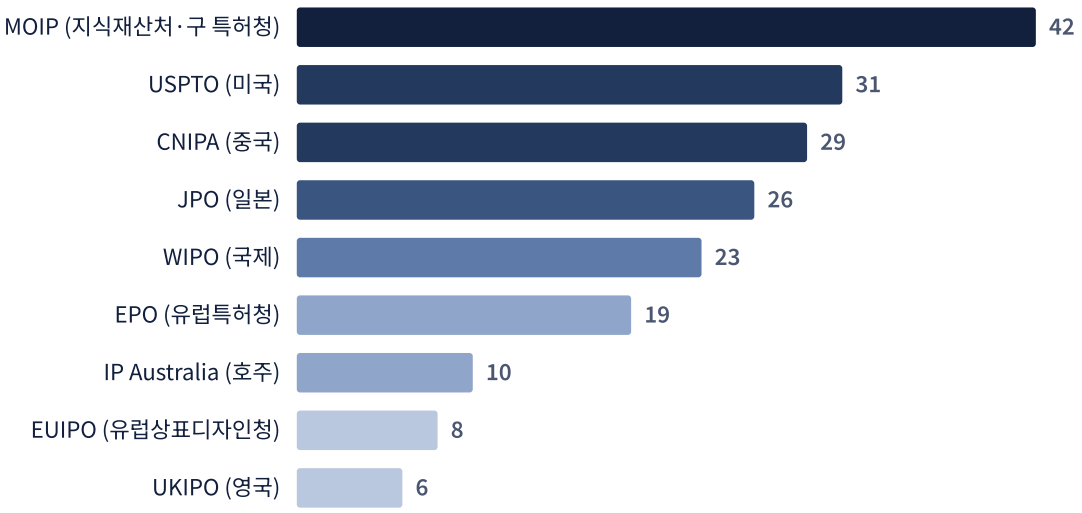
2020년 14건 → 2025년 82건, 5년간 약 6배 증가했다. 2024~2025년의 급증은 생성형 AI의 실무 확산과 각국 대응 본격화 시점과 일치한다.

2.2 주제·관청별 분포



9개 주제(TOPICS)별 항목 수 (항목당 1~3개 중복 태그 가능, 합계는 305건 초과)

`examGuidance·policy`가 최대 비중 — 대응이 아직 "실제 배치 도구"보다 **"규범·지침 정비"**에 쏠려 있음을 보여준다. `design`(AI-디자인)은 최소 비중으로, 일본·영국·한국 등 소수 관청만 다룬다(6.1절).



관청·기구별 항목 수 (법원·정부기관 등 특정 관청 미분류 110건 제외)

지식재산처(MOIP, 42건)가 최다 등장하지만, 이는 **아카이브의 한국어 자료 접근성** 때문이며 실제 활동량 1위를 의미하지 않는다(2.4절 참조). USPTO(31)·CNIPA(29)·JPO(26)가 뒤를 잇는다.

2.3 분석 방법

원칙	내용
원문 재탐색	7개 리서치 트랙이 담당 범위의 중요도 상위 항목(전체 약 100건)의 원문 URL을 재fetch해 수치·인명·일자·근거를 보강
검증 우선	원문 접근 차단·응답없음 시 명시하고 아카이브의 기존 검증 요약만 사용 — 추정·창작 금지
전략적 종합	개별 뉴스 나열이 아니라 관청별 최적화 대상·차별점을 분석 단위로 설정

2.4 한계

한계	내용
수집 편향	한국·미국·영어권 소식이 실제 활동량보다 과대표집 가능성. 일본·중국 자국어 1차자료는 번역 과정에서 뉘앙스 소실 가능
원문 접근 제약	JPO·호주감사원(ANAO)·EUIPO 일부 페이지가 자동화 접근을 차단 — 2차 출처·기존 요약으로 대체(각 절 말미에 명시)
발표·실배치 혼재	공식 발표가 "개발착수"·"대국민 실배치"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원문이 모호하면 완전히 해소하지 못함
해석의 주관성	10~11장의 종합·제언은 AI의 분석적 판단을 포함 — 사실이 아닌 해석이므로 **내부 검토를 통한 교차검증 필요**

CHAPTER 3

AI 발명자성과 분쟁 동향

3.1 AI 발명자성·특허적격성 동향

3.1.1 다부스 사건과 초기 판례 (2019~2021)

날짜	사건
2019-08-01	서리대 연구팀, AI 'DABUS'를 발명자로 명시해 영·EU·미 특허 동시 출원
2020-01-27	EPO, 다부스 출원 거절 — "발명자는 자연인만 가능"
2020-09-21	영국 고등법원, 동일 취지 판결
2021-07-28	남아공 CIPC, 실체심사 없이 다부스 특허 등록
2021-07-30	호주 연방법원(1심), 세계 최초로 AI 발명자 지위 인정 — "발명자의 통상적 의미가 AI를 배제하지 않는다"
2021-09-02	미국 버지니아동부연방지법(Thaler v. Hirshfeld), AI 발명자성 불인정
2022-04-13	호주 전원합의체(5인), 1심 판결 만장일치 파기

3.1.2 "발명자는 자연인" 원칙의 국제적 확립 (2022~2023)

날짜	법역	판단
2022-08-05	미국(CAFC, Thaler v. Vidal)	§100(f) "individual"은 자연인 전제, 확장해석 배척 — "의회 입법 사안"
2022-09-06	브라질 INPI	동일 원칙 확인
2022-09-28	한국 특허청	다부스 출원 무효처분(발명자 보정 불응)
2022-11-11	호주 대법원	동일 원칙 확인
2023-03-15	이스라엘 ILPTO	동일 원칙 확인
2023-03-17	뉴질랜드 고등법원	동일 원칙 확인
2023-04-24	미 연방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2023-12-20	영국 대법원	상고 만장일치 기각 — 단, "AI 자율창작물의 특허대상성 정책 문제까지 다루는 것은 아니다"

발명자 기재 여부라는 절차적 쟁점과 AI 지원 발명 자체의 보호가능성은 처음부터 별개 문제였다는 점을 영국 대법원이 명시한 대목이 특히 중요하다.

3.1.3 나머지 법역의 합류와 소송 종결 (2024~2026)

날짜	법역	판단
2024-05-16	한국 서울고등법원 / 일본 도쿄지법	동일 원칙 확인
2025-01-30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항소기각
2025-06-05	캐나다 특허항고심판원	Thaler (Re) 2025 CACP 8
2025-09-02	영국 고등법원	발명자 정정 시도도 기각
2026-03-04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 7년 소송 종결, 8번째 합류
2026-04-15	인도 특허청	첫 실체판단

미·영·EU·호주·한국·일본·캐나다·인도·이스라엘·뉴질랜드·브라질 등 거의 모든 주요 법역이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로 수렴했다.

3.1.4 새로운 분화선: 유의미한 기여 기준과 특허적격성

합의 이후 쟁점은 "AI를 도구로 쓴 발명에 사람이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가"로 이동했다.

날짜	법역/기관	내용
2024-02-13	미국 (USPTO)	파누(Pannu) 3요소 기반 "유의미한 기여" 지침 — 구체적 예시(불충분/충분) 제시
2024-12-31	중국 (CNIPA)	"실질적 특징에 대한 창조적 기여"라는 원칙적 기준만 제시(정량기준 회피)
2025-11-26	미국 (USPTO)	위 지침 전면 폐기, 정반대 지침으로 대체(행정명령 14179호 후속) — "AI는 도구일 뿐, 파누 기준 적용 자체가 부적절"

특허적격성(§ 101) 심사기준도 유동적이다.

날짜	법역/기관	내용
2025-04-18	미 CAFC(Recentive v. Fox)	범용 머신러닝 기법의 신규 데이터 적용만으로는 특허대상 아님
2025-11-26	USPTO(Ex parte Desjardins)	'재앙적 망각' 없는 다중과업 학습모델 개선을 특허적격 인정(선례 지정) — § 101 문턱 완화
2026-02-11	영국 대법원	40년 유지된 Aerotel 기준 폐기 → EPO식 '기술수단' 접근 채택(영국-EPO 격차 해소)
2026-03-30	미 CAFC	AI 자연어처리 특허 무효 확정 — 법원·USPTO 간 온도차 노출

3.2 AI 관련 분쟁·소송 동향

세 갈래로 유형화된다.

3.2.1 영업비밀 침해·경제스파이

날짜	사건
2018-02-09	웨이모-우버(자율주행 라이다), 2.45억달러 합의로 조기 종결
2023-04-25	중국 광둥성, 추천알고리즘 영업비밀 판례
2024-08-02	중국, AI 반도체(NPU) 기술유출 형사사건(전국 최초)
2025-08-29	xAI, 전직 엔지니어의 그록 기밀 유출·오픈AI 이직 제소(2026-06-15 재소불가 기각)
2026-01-29	린웨이 딩 사건 — 전직 구글 엔지니어의 TPU·GPU 기밀 2000쪽 유출·중국行 시도, 경제스파이 첫 유죄평결
2026-07-10	애플, 오픈AI·전직 임원 상대 아이폰 기밀유출 영업비밀 소송

모델 가중치·학습 인프라·커스텀 AI칩이 핵심 영업비밀 자산으로 부상했고, 미중 간 인재·기술 이동을 매개로 형사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3.2.2 AI 브랜드 상표분쟁

날짜	사건
2025-05-22	인도, 현지 선사용기업 이의신청으로 ChatGPT·제미나이·Grok 출원 좌절
2025-07-21	오픈AI, 상표 스쿼터 상대 승소(등록취소)
2025-10-17	EUIPO, 오픈AI GPT·GPT-3·GPT-4 상표 전부무효화(업계 일반명칭), GPT-5는 일부무효 — 美 USPTO·中 CNIPA 거절에 이어 유럽 등록분마저 뒤집힘
2025-11-19/24	오픈AI, Sora 명칭·'Cameo' 기능명 상표 피소
2025-12-03	오픈AI, 하드웨어 브랜드 'io' 역혼동 소송 — 제9항소법원 사용금지 확정
2026-07-01	앤스로픽, 최대 고객사 어브노멀AI를 로고 도용으로 제소

GPT·Sora·io·Perplexity 등 기술용어형 브랜드명이 식별력 부족·제네릭화 리스크에 반복 노출되고 있다.

3.2.3 데이터·모델 이용 소송

날짜	사건
2025-02-27	EU사법재판소, 영업비밀만으로 신용평가 알고리즘 설명 전면거부 불가 판결
2025-11-04	게티이미지 v. 스태빌리티AI(영국) — 저작권침해 대부분 기각(학습 역외 수행), 워터마크 재현만 제한적 상표침해 인정. 생성AI 모델개발 관련 영국 법원 첫 주요 판결
2026-03-05	중국 최고인민법원, 생성AI 지재권 재판규칙 정립 필요성 공식화
2026-07-07	미드저니, 할리우드 스튜디오 저작권 소송에 스튜디오 내부 AI사용기록 공개 요구로 역공세

소송 무게중심은 美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법·英 고등법원에 집중돼 있고, 중국은 형사화·최고법원 정책신호로 별도 궤적을 그린다.

3.3 종합 시사점

구분	시사점
발명자성	8개+ 법역이 "AI는 발명자 불가"로 수렴 완료(지식재산처도 이미 부합). **남은 과제는 "얼마나 기여해야 인정되는가"라는 실질기준** — 미국식 정치적 요동, 중국식 모호성 모두 지양하고 독자적 '유의미한 기여' 기준을 **조기 구체화**할 필요.
특허적격성	아직 국제적으로 유동적인 실전선. 법원·심사청 간 온도차(미국), 심사기준 전환(영국)이 계속되는 중 — 한국의 컴퓨터구현발명 기준도 정합성 점검 필요.
분쟁	**무게중심이 "누가 발명했는가"에서 "누가 핵심 기술자산·브랜드를 통제하는가"로 이동**. 영업비밀 형사화는 데이터자산 의제와 직결되고, GPT 무효화 사례는 국내 AI 기업 상표심사에도 시사점을 준다.

CHAPTER 4

관청 AI 심사시스템과 심사실무 동향

4.1 관청별 AI 심사도구 배치 현황

"발표"와 "실배치"를 구분해야 성숙도 차이가 드러난다.

4.1.1 USPTO — 선두 그룹

날짜	도구	내용
2021-12	PE2E 유사도 검색	심사관 선행기술 검색 시스템에 AI 유사도 검색 최초 도입
2025-07-17	DesignVision	디자인특허 전용 이미지검색 AI, 해외 80개+ 데이터베이스 통합. 심사관 전용, "보조·대체 아님" 원칙 명문화
2025-10-08	ASAP!	출원 초기 자동 선행기술조사 파일럿. 2026-04 기준 신청 169건 중 76건 승인, 목표 200→400건/기술센터로 확대
2026-03-19	Class ACT	상표 분류·디자인서치코드 자동부여 에이전트. "5개월 작업을 5분으로", 공개 전 직원검토 유지
2026-05	이미지검색 RFI	계류특허 126만 건·미심사 77만4천 건 적체 속 신규 도구 RFI 공고

4.1.2 유럽·한국·호주 — 실배치 그룹

관청	내용
EPO	벡터화·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 기반 자동분류·검색(EP-AutoCla), 상위 80건 중 약 60%가 실제 인용문헌
EUIPO	2020 eSearch Plus·TMview 이미지인식 도입 → 2025-11 'Early TM Screening'(출원 전 무료 사전점검, 결과는 참고용)
지식재산처(MOIP)	2021 AI 이미지검색(200만 건 학습) → 2022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선행기술검색(500만 건) → 2024 '특허심사GPT' 착수 → 2026 워트인텔리전스 '특허 AI 에이전트'·차세대 행정체계 IPNEX 병행 — 배치 속도는 선두권과 대등
IP Australia	2018부터 특허심사 AI 도입, 현재 4종 운영(자동분류기·예비검색·패밀리 분석기 등). 2026-06 감사원(ANAO) "대체로 효과적"·성과지표는 "부분적 효과적"
브라질 INPI·인도 DPIIT·WIPO	상용 솔루션 결합으로 빠른 실전 배치(INPI: 심사시간 최대 50%↓, DPIIT: 'IP 사르티' 챗봇, WIPO: Global Brand Database 45개국 3,800만 건)
JPO·UKIPO	후발주자 — JPO는 생성AI 실질 심사적용이 "기술실증" 단계, UKIPO는 2026-07에야 심사관용 AI 검색도구 예비 시장조사 착수

4.1.3 특허·상표·디자인별 심사지원 AI 도구 비교

관청별로 실제 배치(또는 확인된 개발중) 도구를 IP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는 이 아카이브 범위에서 전용 도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관청	특허	상표	디자인
USPTO(미국)	PE2E 유사도검색(2021), ASAP! 선행기술조사(2025)	Class ACT 분류자동화(2026), 이미지검색 베타(2026)	DesignVision 이미지검색(2025)
EPO(유럽)	EP-AutoCla 자동분류·검색	—	—
EUIPO(유럽)	—	eSearch Plus·TMview 이미지인식(2020), IP5 통합검색(2023), Early TM Screening(2025)	이미지검색 기능 상표와 공동 운영(전용 디자인 도구는 미확인)
JPO(일본)	의미기반 선행기술조사 AI, 특허 특화 신경망번역(NMT)	화상인식 AI(유사판단)	화상인식 AI(유사판단)
CNIPA(중국)	특허 빅데이터 분석(AI+시나리오 판단례 발표)	—(심사기준상 AI 상표 사건 다수, 전용 도구명 미확인)	—
지식재산처(MOIP, 한국)	AI 선행기술검색(2022,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특허심사GPT(2024~), 특허 AI 에이전트(2026, 워트인텔리전스)	AI 이미지검색시스템(2021)	AI 이미지검색시스템(2021, 상표와 공동)
IP Australia(호주)	자동분류기·예비검색도구·패밀리분석기 등 4종	TM 체커(2022)	—
UKIPO(영국)	도입 전 시장조사 착수(2026-07, 미배치)	—	—
WIPO(국제)	—	Global Brand Database 딥러닝 이미지검색(45개국 3,800만 건)	—
브라질 INPI · 인도 DPIIT	CAS 협업 AI(INPI, 심사시간 50%↓) · 'IP 사르티' 챗봇(DPIIT)	—	—

특허 분야가 압도적으로 도구가 많고, 디자인 분야는 전용 도구가 가장 희소하다(대개 상표 이미지검색 기능을 공유). 지식재산처(MOIP)는 특허·상표 양쪽 모두 주요국과 대등한 도구를 갖췄으나, 디자인 전용 도구는 다른 관청과 마찬가지로 공백이다.

4.2 AI 심사실무·가이드라인 정비 동향

4.2.1 EPO — 연례 정교화 / JPO — 사례 축적

관청	연도	내용
EPO	2018	AI·ML을 수학적 방법 하위범주로 규정(세계 최초)
	2019	용어 완화
	2022	G 1/19 판결 반영, '잠재적 기술효과' 개념 도입
	2024	전용 조항(G-II 3.3.1) 신설, 생명공학 수준 기재요건 요구
	2026	총칙 5절 AI 전용 신설, 심사관 독자검증 의무 명문화
JPO	2017	AI 심사사례 5건 공표(세계 최초 수준)
	2019	10건 추가
	2022	만화판 심사기준(대중 교육용)
	2024	10건 추가(누적 25건)
	2026	갱신, 생성AI 심사보조 항목 신설

4.2.2 미국·영국 — 정치·판례에 연동된 급변

날짜	내용
2024-02	美 발명자 지위 지침(파누 3요소), 행정명령 14110호(바이든) 후속
2024-07	美 특허대상적격성 예시(47~49) 발표
2025-01	행정명령 14110호 폐기로 불확실성 발생
2025-08	美 'Kim Memo' — '정신적 과정' 거절 남용 경고
2025-11	美 'Ex parte Desjardins' 선례 지정, § 101 심사부담 완화 선회 / 2024년 지침 폐기
2022	英 첫 AI 발명 심사가이드(18개 예시)
2024	英 항소법원(인공신경망도 배제대상) 판결 → UKIPO 즉시 지침 개정
2026-02	英 대법원, 40년 기준(Aerotel) 폐기 → EPO식 전환. 법원이 특허청보다 정책을 주도한 이례적 사례

4.2.3 중국·한국·기타 — 단계적 제도화

관청	날짜	내용
CNIPA	2019~2022	알고리즘 조항 신설(2019) → 해설(2020) → 5개년계획(2022)
	2024-12	'AI 관련 발명특허 출원지침' — 자연인 창조적 기여 기준
	2025-11	제84호 국장령 개정 — AI 윤리조항(법률·공서양속 위반 시 배제) 도입
지식재산처(MOIP)	2020~2023	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제정·개정
	2026-01	3차 개정(생성형AI·온디바이스AI 등 5건 추가, 총 15건)
	2026-06~07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AI 활용 디자인출원 가이드' 발간
IPOS(싱가포르)	2024-10 / 2026-04	보충지침(9개 사례) → 영국 대법원 판결 국내시사점 의견수렴 — 대형 관청 판례를 신속 추적하는 소형 관청 전형
IP5	2022~2026	NET/AI 로드맵(2022) → 5개청 비교표(2023) → 신뢰AI 활용 작업반 신설(2026-06 도쿄)

4.3 종합 시사점

구분	시사점
설계 원칙	선두·후발을 가르는 것은 발표의 화려함이 아니라 (1) 과업을 검색·분류 등 좁은 영역으로 한정, (2) 배치·거버넌스 동시 병행, (3) 가이드라인을 '살아있는 문서'로 계속 갱신하는 세 가지 원칙
거버넌스 공백	**OIG(美, 2025.4)·ANAO(濠, 2026.6) 모두 "도구는 이미 쓰이는데 성과지표·위험관리가 없다"는 동일 결론** — 선배치·후정비의 구조적 함정
지식재산처 시사점	IPNEX·특허심사GPT·심사가이드 3차 개정 등 배치 속도는 대등하나, IP-AX 추진단의 'AI 윤리규정 연구' 임무를 도구별 성과지표·위험관리계획 **사전 문서화**로 구체화하고, "AI는 보조, 최종책임은 사람" 원칙을 규정에 명문화할 필요

CHAPTER 5

AI 정책과 데이터자산 보호 동향

5.1 국가별·다자간 AI+IP 정책 동향

각국의 규제 철학은 뚜렷이 갈린다.

5.1.1 미국 — 안보·탈규제 프레임

날짜	내용
2025-01-20	트럼프 취임, 바이든 AI 행정명령(EO 14110) 폐기 → 3일 후 'AI 리더십 장벽 제거' 명령
2026-06-02	'AI 혁신·안보 촉진' 행정명령(EO 14409) — 의무적 정부 라이선싱·사전승인 불승인 원칙 재확인, 동시에 국가안보시스템 사이버방어·AI 사이버보안 클리어링하우스 신설

지식재산은 '적대세력의 절취·악용 방지'라는 국가안보 의제로 재프레이밍됐고, 연방 컴퓨터사기법에 따른 AI 관련 데이터절취 기소가 우선순위로 명시됐다.

5.1.2 EU — 위험기반 규제와 균형추 설계

날짜	내용
2020-11-25	지식재산 행동계획(COM(2020) 760) — AI 지원발명 진보성 재검토, 영업비밀지침 재평가 제기
2021-04-21	AI규제법(AI Act) 초안 — 투명성 의무가 영업비밀보호지침(2016/943) 침해하지 않도록 명시
2025-07-10	범용AI(GPAI) 실무규범 —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 영업비밀 비공개(redaction) + 규제당국 안전열람권 절충
2025-11-19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 — 데이터법 개정, 영업비밀 보유자에 데이터공유 거부권 부여(규제부담 완화 선회)

5.1.3 중국·한국·다자 플랫폼

날짜	주체	내용
2021-09-22	중국	「지식재산권 강국건설 강요(2021-2035)」 — 알고리즘·AI산출물 지재권 보호규칙 연구 명시
2025-08-26	중국 국무원	'AI+' 행동 심화 실시 의견(국발[2025]11호) — 데이터재산권·저작권 제도 정비, 가치기여도 기반 수익분배 명시(CNIPA 데이터IP 등기 확산의 정책적 근거)
2021-02	한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의결
2025-10-01	한국	특허청 → 지식재산처(MOIP) 승격,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
2026-05-20	한국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 출범(초대 단장 윤기웅) — 3대 임무: 법제정비·AI-Native 행정·민간전환 지원
2026-03-17	WIPO	AI 인프라 인터체인지(AIII) 출범 — 90여 명 기술교류네트워크, 2026-10-02 첫 연례회의
2026-06	IP5	NET/AI 로드맵 5년 성과 점검(도쿄), '휴먼 인 더 루프(HITL)' 원칙 공동 합의 — 한국이 IP-AX 계획 소개
2026-04-08	SAIL 재단	Anthropic·IBM·Meta·Microsoft 등, AI 특허패밀리 3.3만여 건 회원사 간 무상 공유(업계 자율 방어적 특허공유)

5.2 데이터 자산·영업비밀 보호 동향

두 접근이 분화됐다 — **기존 영업비밀법제 확장(미·EU)** vs. **새 재산권 범주 창설(중국)**.

5.2.1 중국 — 데이터지식재산권 등기제도

날짜	내용
2022-11	선전시, 전국 최초 등기시범 업무방안 발표·시스템 가동
2022-12-09	선전, 세계 최초 등기증서 2건 발급
2024-12-08	상하이, 블록체인 기반 무상 등기('등기존증 잠행판법') — 시행 한 달여 만에 158건 등기, 74건 거래소 상장, 400만 위안+ 거래
2025-09-18	저장성, 전국 최초 'AI 분야' 등록지침 — 대모델 알고리즘·파라미터·모델(가중치 포함) 자체를 등록대상으로 규정
2026-01-07	CNIPA, 전국 등기증서 **4만 장 돌파**, 관련 융자·라이선스 거래액 **약 150억 위안**

5.2.2 미국·EU — 계약·판례 중심 대응

날짜	내용
2026-01-01	캘리포니아 AI 학습데이터 투명성법(AB 2013) 시행 — 학습데이터셋 요약 공개 의무(위헌소송 제기됨)
2026-04-28	Bloomberg Law — AI에 입력된 정보는 되돌리기 어려운 '일방향 문'. 직원 약 **40%**가 승인없이 민감정보를 AI에 입력한 경험 有
2025-12-17	엔비디아, 발레오의 자율주차 소스코드 유출 소송 재판 직전 합의
2026-06-26	스탠퍼드 조사 — AI 관련 SaaS 계약의 **92%**가 필요 범위를 넘어서는 데이터 이용권 주장(일반 SaaS 평균 63%)

한국은 2022-04 개정 부정경쟁방지법(데이터 부정취득 규제) 이후 별도 데이터재산권 범주 없이 기존 법제를 확장 적용 중이며, 2026-06-19 지식재산처가 노후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을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했다.

5.3 종합 시사점

구분	시사점
중국 모델	정량적 성과(4만 장·150억 위안)는 뚜렷하나, 등기의 법적 성격(사실확인 대 배타적 권리)과 국제 상호인정은 불분명
미국 모델	유연하나 예측가능성이 낮고, 거대기업 간 고비용 소송(애플-오픈AI 등)으로 비화하기 쉬움
EU 모델	정교하나 집행부담이 커 이미 완화(옴니버스) 방향으로 선회
지식재산처 시사점	**조직 거버넌스 선제성(승격+추진단)은 이미 강점**. 데이터자산 법제는 중국식 등기제도의 부분적 요소(전면 이식이 아닌 자발적·비독점적 '사실증명형')를 한국 AI산업 구조에 맞게 시범 검토할 실익이 있음

CHAPTER 6

상표·디자인·출원지원도구 동향

6.1 AI-상표·디자인 동향

6.1.1 상표 — 등록적격성 쟁점은 이미 정리됨

날짜	관청	내용
2025-06-13	일본 JPO	AI로 작성한 상표도 현행 제도로 등록 가능 공식 확인 — 상표는 창작성 보상이 아닌 출처표시 기능이 목적이므로 창작방법(AI/인간)은 무관

실질적 전장은 "AI가 만든 표장의 등록적격성"이 아니라 "AI 기업 브랜드명의 일반명칭화·충돌 문제"로 이미 이동했다 (분쟁 상세는 3.2.2절 참조: GPT 무효화, DEEPSEEK 63건 거절 등).

6.1.2 디자인 — 인간 개입 요구로 수렴

날짜	관청	내용
2025-03-31	일본 METI/JPO	조사보고서 — AI 자율창작 디자인 보호에 부정적 견해 우세
2025-06-30	일본 의장제도 소위	4대 검토과제(적격성·창작자·선행자격·신규성예외) — "생성AI 이용 자체는 직접 요건으로 삼지 않음"
2025-09-04	영국 UKIPO	디자인제도 컨설테이션 — AI 단독 창작 디자인 보호 폐지를 정부 선호안으로 제시(실무상 미활용, 법적 미검증, 인간 창작 저해 우려)
2026-07-09	지식재산처 (MOIP)	첫 'AI 활용 디자인출원 가이드' — 창작자는 자연인 전제, 사람의 구체적·실질적 기여를 등록요건으로 제시(일본·영국과 같은 방향)

`design`이 가장 얇은 주제인 이유는 커버리지 부족이 아니라 **논의 자체가 일본·영국·한국 등 소수 관청에 국한**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2 생성AI 출원서 작성지원 도구 시장 동향

6.2.1 벤처 플랫폼의 급성장

날짜	기업	내용
2025-04 / 2025-12	Solve Intelligence	시리즈A 1200만달러(MS M12 참여) → 시리즈B 4000만달러(누적 5500만달러), 소송지원 도구 'Charts' 출시, 200여 IP팀 고객, 매출 10배+ 성장
2025-03 / 2026-03	DeepIP	시리즈A 1500만달러 → 시리즈B 2500만달러(누적 4000만달러), MS워드 완전내장, 25개국 400+ 로펌·기업 고객
2026-04	Patlytics	시리즈B 4000만달러(누적 6500만달러), 발굴~드래프팅~무효분석 전과정 지원, AmLaw100의 40%+ 고객
2024-07	Clarivate	AI 드래프팅 스타트업 Rowan TELS 인수
2026-06	피시앤리처드슨	자체 개발 도구 'FishStream AI' 출시(로펌 내재화 경쟁)

중국(즈후이야 'Eureka')·일본(AI Samurai)·한국(젠아이피 '젠-D', 워트인텔리전스) 등 자국 벤더도 상용화가 진행 중이다.

6.2.2 품질·윤리 규율은 성장세를 뒤따라감

날짜	주체	내용
2024-04	USPTO(89 FR 25609)	대리인 성실의무는 AI 사용 무관 그대로 적용, AI 산출물 신뢰만으로 '합리적 조사' 의무 불충족
2025-04	일본변리사회	명세서 작성은 변리사 전권업무, 의뢰인 비밀정보의 외부 AI 입력에 사전동의 필요
2025-07	UIC·미주리과학기술대	'PATENTWRITER' 벤치마크 — 주요 LLM이 기술·법적 정밀성에서 사람 작성본 못 미침
2025-10	PatSnap 연구진(자사 제품 대상)	자사 'Eureka' 결함 9.04건/문서 vs. 사람 작성본 7.13건(경쟁사 MindFlowing 12.14건) — 벤더 스스로 결함을 공개
2025-12	영국 CIPA	미검증 AI 도구에 발명 입력 시 '공개'로 간주돼 특허받을 권리 상실 위험 경고

6.3 종합 시사점

구분	시사점
처리량 압력	발명신고서 작성 10분·명세서 초안 2시간이라는 벤더 주장이 사실이면 **출원 유입 속도가 심사역량 증가 속도를 앞지를 수 있음**
품질 압력	AI 생성 문서가 사람 작성본보다 결함이 많을 수 있어(PATENTWRITER 등), 심사AI는 검색·분류를 넘어 'AI 드래프팅 특유의 실패 유형'까지 걸러내야 함
거버넌스 공백	출원인·대리인 측 AI는 관청 통제범위 밖 — 지식재산처의 대리인 대상 성실의무·비밀유지 지침이 현재 확인되지 않음. USPTO·일본변리사회 사례를 벤치마크할 필요
우선순위	상표(브랜드 충돌 급증 → 출원 전 필터링 도구 실익 큼) > 디자인(소수 관청 논의 단계, 한국은 이미 가이드 발간으로 상대적 우위)

CHAPTER 7

미국(USPTO)과 WIPO의 전략

7.1 USPTO의 AI 전환 전략

7.1.1 절차적 원칙: 선(先) 의견수렴, 후(後) 규범화

날짜	내용
2018-12-05	AI·지식재산 정책 최초 종일 컨퍼런스
2019-08 / 2019-10	AI 발명 특허성 / 비특허분야(상표·영업비밀) RFC 2회, 약 200건 의견 수렴
2020-10	종합보고서 발표
2022-06	'AI·신흥기술 파트너십' 출범 — 2025-01 기준 **6,000명+** 이해관계자 참여
2023-02	'AI와 발명자성' RFC(동·서부 청취회)
2026-05	심사관용 AI 이미지검색 도구 RFI(마감 6-19)

7.1.2 발명자성 정책의 정치적 반전

날짜	내용
2024-02-13	발명자 지위 가이던스(행정명령 14110호 후속) — 파누 3요소로 "유의미한 기여" 판단
2025-11-26	가이던스 전면 폐기(행정명령 14179호 후속) — "AI는 실험기구와 같은 도구", 파누 기준 적용 자체가 부적절

발명자성 정책이 법리가 아니라 백악관의 AI 리더십 노선에 직접 연동되는 정치적 변수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7.1.3 특허대상적격성(§101) — 문턱 완화

날짜	내용
2025-08-04	'Kim Memo' — '정신적 과정' 거절 남용 경계, 거절은 부적격 확률 50%↑일 때만
2025-11-26	'Ex parte Desjardins' 선례 지정 — 계산성능·학습개선을 기술적 진보로 인정
2026-04-30	Rule 132 선언서(SMED) 제출 지침 갱신

7.1.4 도구 배치 — 연쇄 파일럿

날짜	도구	내용
2025-07-17	DesignVision	디자인 이미지검색, 80개+ 해외DB 연계
2025-10-08	ASAP!	자동 선행기술조사 파일럿
2026-04-22	ASAP! 확대	수수료 면제, 목표 200→400건/센터로 두 배
2026-03-19	Class ACT	상표 분류·서치코드 자동화, "5개월→5분"

배경에는 계류특허 **126만 건**, 미심사 **77만4천 건**, 심사관 **8,800명**, 평균 처분기간 **2.5년**이라는 적체 압박이 있다(2026-05 RFI). 다만 2025-04 상무부 감사관실(OIG)은 위험관리 계획 부재를 지적했고, ChatGPT·GROK 상표는 AI 업계라는 이유로 예외 없이 거절돼 **"AI 친화"와 "AI 특혜"를 구분**하는 태도를 보였다.

7.2 WIPO의 글로벌 조정자 역할

세 축 — 데이터 발간, 다자 대화, 인프라 플랫폼 — 으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7.2.1 데이터·분석 발간

날짜	내용
2019-01-31	'Technology Trends' 창간 — AI 특허 약 34만 건, 딥러닝 출원 20배 급증(2013~2016) 분석
2024-07-03	생성형AI 특허지형 보고서 — 2014~2023년 특허패밀리 **약 5.4만 건**. 중국 3.8만 건(1위)·미국 6,276건·한국 4,155건·일본 3,409건·인도 1,350건(성장률 최고)
2026-03-06	PCT 국제출원 통계(27.6만 건) — AI 투자 확대를 디지털통신 증가 배경으로 지목

7.2.2 다자 대화 및 인프라 구축

날짜	내용
2019~2022	'IP와 AI 대화' 시리즈 1~6차 — 발명자성→데이터자산→행정활용→심사관행 국제비교로 의제 확장(130개국+)
2023 / 2025	SCP 발명자성 문서(SCP/35/7 → SCP/37/5) 갱신
2026-03-14	Global Brand Database 딥러닝 이미지검색 고도화(45개국 3,800만 건)
2026-03-17	AI 인프라 인터체인지(AIII) 출범 — 90여 명 기술교류네트워크
2026-07-10	ITU 공동 'IP 관리 클리닉(IPMC)' 출범 — AI 스타트업 20개사 지원
2026-07-07	2026 총회 개막 — 무형자산 투자 최초 **10조달러** 돌파 발표, 개도국의 포용적 AI-IP 시스템 요구 부상

7.3 차별화 포인트 요약

구분	USPTO	WIPO
최적화 대상	국내 정책노선에 연동된 실행 속도	정치적 중립성 기반 데이터·플랫폼 공공재
정치 변동 영향	정권교체에 18개월 내 정면 반전(EO14110→14179)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다년 단위 축적
대표 산출물	DesignVision·ASAP!·Class ACT 연쇄 파일럿(수치 목표+수수료 인센티브 결합)	생성AI 특허지형 보고서, AIII, 45개국 공동DB

CHAPTER 8

유럽·일본·중국(EPO·JPO·CNIPA)의 전략

8.1 EPO의 심사기준 정교화 전략

신규 도구보다 「심사지침」·확대심판부 판례를 매년 정교화하는 방식이다(연혁은 4.2.1절 표 참조). **핵심은 '기술적 성격(technical character)'이라는 기존 심사철학의 틀 안에서 AI 발명을 재단하는 '보수적 정교화'**다.

날짜	내용
2026-04-01	통합 심사지침 발효 — AI 활용 전용 절 신설, EPC 제83조 기재요건 강화(학습데이터 종류·규모·신경망구조·하이퍼파라미터 기재, 데이터셋 기탁 권장)
2025-02	내부 'AI 정책' 사전협의 없이 공지 → 중앙직원위원회(CSC) 항의(SP2028 분류자동화 46%→90% 목표 관련 노사갈등)
2026-02-01	PACE 가속심사 개편 — 조사단계 자동편입, 심사단계는 별도 신청

특허지수 2024에서 컴퓨터기술(AI 포함)이 **1만6,815건으로 EPO 전체 1위** 기술분야에 올랐다. EP-AutoCla 자동분류는 상위 80건 중 **약 60%**가 실제 인용문헌에 해당하는 정확도를 보이나, EPO는 이를 일관되게 '보조'로 규정한다.

8.2 JPO의 단계적 액션플랜 전략

다년도 '액션플랜'을 매년 개정 공표하는 IP5 유일의 관청이다(연혁은 4.2.1절 표 참조).

연도	내용
2022	5개년(2022~2026) 액션플랜 — 8개 과제, 'AI 후보추출·심사관 최종판단' 하이브리드 모델 명문화
2024	특허분류·선행기술조사① 실증→도입(운영) 전환. 생성AI는 "정부정책 주시"로 유보
2025-06	선행기술조사② 도입단계 전환 + '생성AI의 특허심사업무 적용' 신규 항목 신설(거절이유통지 초안·청구항해석 지원 기술실증 착수)

이 전환은 소프트뱅크그룹이 생성AI로 **3,500여 건**(2025-04 이틀간 공개분 포함, 총 1만 건+)을 출원해 심사 인프라를 압박한 시점과 맞물린다. 2026-04 기준 **"검색·분류·번역·화상인식은 운영단계, 생성AI는 시범단계"**라는 이원적 구도가 뚜렷하다. 발명자성은 2026-03-04 최고재판소 상고기각으로 사법적으로 이미 종결됐다(3.1.3절 참조).

8.3 CNIPA의 독자적 데이터자산 등기 모델

기존 특허·영업비밀 해석 확장이 아니라 **새 재산권 범주(데이터지식재산권) 창설**을 택했다(연혁·수치는 5.2.1절 표 참조). 이는 데이터를 노동·자본·기술과 나란한 생산요소로 취급하는 산업정책과 맞물려 있으며, 등기증서→담보/융자→데이터거래소 상장으로 이어지는 자산 금융화 인프라까지 설계한 점이 특허·영업비밀 체계에는 없는 독자적 도구다.

특허심사 측면의 병행 정비:

날짜	내용
2019-12	알고리즘·영업방법 특징을 청구항 전체로 종합판단하는 조항 세계 최초 성문화
2024-12	'AI 관련 발명특허 출원지침' — 자연인 창조적 기여 기준(美 Pannu식 정량기준 미채택)
2025-11	제84호 국장령 개정 — AI 윤리조항을 진보성 판단에 반영(2026-01-01 시행)
2025-02	'DEEPSEEK' 악의적 선점출원 **63건** 일괄 거절

8.4 차별화 포인트 요약

관청	최적화 대상	핵심 리스크
EPO	기존 판례체계와의 정합성	내부 자동화 목표 대 노사갈등
JPO	다년도 로드맵을 통한 예측가능한 단계적 전환	생성AI 실전배치 착수가 상대적으로 늦음
CNIPA	데이터자산의 등기·유통·금융화 인프라	등기의 법적 성격·국제 상호인정 불확실

USPTO(도구 중심)·WIPO(다자 플랫폼)와 대비하면, **EPO·JPO·CNIPA는 각각 '심사기준 정교화'·'로드맵 이행관리'·'신규 재산권 설계'라는 뚜렷이 구별되는 축을 대표**한다.

CHAPTER 9

지식재산처(MOIP)와 주요 비교국

9.1 지식재산처(MOIP)의 AI 전환 여정

9.1.1 특허청(KIPO) 시기의 축적 (~2025.09)

날짜	내용
2019-10	AI·빅데이터심사과 신설(4국→5국) — 4차산업혁명 기술 심사기간 10.7개월→5.7개월
2021-02	국가지식재산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의결(그해 특허청 10대뉴스 1위)
2021	AI 이미지검색시스템 전면도입(200만 건 학습, 상표·디자인 겸용)
2022	카카오엔터프라이즈 AI 선행기술검색(500만 건), 24시간 AI 상담챗봇
2022-09-28	다부스 출원 무효처분(2024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유지)
2023-02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5개년 로드맵'(~2027)
2023-07	LG AI연구원과 엑사원 기반 '특허 전문가 AI' 협약(초거대AI 특허행정 적용 세계 최초)
2024-08	'특허심사GPT' 개발 착수(솔트룩스·젠에이아이피)

9.1.2 지식재산처(MOIP) 출범 이후 (2025.10~)

날짜	내용
2025-10-01	지식재산처(MOIP) 승격 출범(1관9국1단57과→1관10국1단62과),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
2026-05-20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 출범(초대 단장 윤기웅) — AI 특허분쟁·조작영상·데이터 무단사용 대응이 설립 동기, 3대 임무(법제정비·AI-Native행정·민간전환지원)
2026-06-09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 사람의 실질적 기여 요구, 할루시네이션 위험 경고
2026-06-19	'IP-AX 서포터즈' 발족(민관협의체) +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AI 전면개편 착수
2026-07-09	첫 'AI 활용 디자인출원 가이드'

대부분 아직 '착수' 단계다 — IPNEX(차세대 행정체계)는 3월 ISP 수립 간담회 단계, 특허 AI에이전트·영업비밀시스템도 "연내 개발완료" 목표 제시 수준이며, 특허 10개월·상표 6개월 심사단축 목표(김용선 처장)는 2029년 시점의 장기 계획이다. **대국민 공개 AI 도구는 2021~2022년(이미지검색·챗봇) 이후 신규 사례가 뚜렷하지 않다.**

9.2 유럽·영국·호주의 참고 사례

작지만 빠르게, 순차적으로 무료 공개도구를 내놓는 패턴이다.

관청	날짜	내용
EUIPO	2020-01	eSearch Plus·TMview AI 이미지인식 도입
	2023-05	CNIPA·JPO·MOIP·USPTO 데이터 통합, 5,700만 건 도형상표 비교
	2024-07	'AI 거버넌스' 기능·AI 코디네이터 신설(SP2030 병행)
	2025-11 / 2026-06	'Early TM Screening' 공개 / 'Communication 1/2026' 직원 생성AI 지침 갱신(정보등급별 규칙+필수교육)
UKIPO	2022-09	18개 예시 AI 발명 심사가이드(세계에서 이른 시기)
	2025-09	디자인 전면 컨설테이션(AI단독 창작 보호 폐지안)
	2026-07	심사관용 AI 도구 사전 시장조사(7-24 마감, 11월 계약목표)
IP Australia	2022-09	'TM 체커' 시범 출시(IPA벤처스)
	2025-02 / 2025-05	'AI 투명성 성명' → 'AI 거버넌스 정책'(위험평가·문서화 의무화)
	2026-05 / 2026-06	'IP First Response' 챗봇 베타 / ANAO 감사(대체로 효과적, 성과지표는 부분적 효과)

9.3 격차 및 시사점

격차 축	내용
대국민 공개 도구	EUIPO(2020~2025 순차 확대)·IP Australia(4년 간격 2개 서비스) 대비, **지식재산처(MOIP)는 2021~2022년 이후 신규 대국민 서비스 부재**
내부 거버넌스 문서화	EUIPO·IP Australia는 직원용 AI 지침·투명성 성명을 별도 문서로 공개, 외부감사(ANAO)까지 받음. 지식재산처는 대외용 심사가이드는 앞서지만 **내부 AI 사용 규범은 공개된 바 없음**
조달 개방성	UKIPO·USPTO는 공개 RFI·시장조사 후 계약. 지식재산처는 사업자 특정 후 발표하는 방식이 두드러짐 — 선행하는 공개 절차 미확인

IP-AX 추진단이 표방한 **"글로벌 AI-IP 규범의 룰메이커"**에 부합하려면, 사후적 의견수렴(서포터즈)을 넘어 조달 이전 단계의 공개 시장참여 절차와 직원용 AI 거버넌스 문서화가 우선 공백으로 보인다.

CHAPTER 10

종합 비교분석 및 시사점

10.1 일곱 가지 전략 유형

관청·기구별 대응은 하나의 표준모델로 수렴하지 않고 최소 일곱 가지 전략 유형으로 분화돼 있다.

유형	대표 관청	최적화 대상	핵심 리스크
도구 배치 속도형	USPTO	처리 적체 해소, 브랜드화된 파일럿 연쇄 출시	거버넌스가 배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OIG 감사)
판례·지침 정교화형	EPO	기존 판례체계와의 정합성	내부 자동화 목표와 노사 갈등
로드맵 이행관리형	JPO	다년도 계획에 따른 예측가능한 단계적 전환	생성AI 실전배치 착수가 상대적으로 늦음
신규 재산권 창설형	CNIPA	데이터자산의 등기·유통·금융화 인프라	법적 성격(사실증명 대 배타적 권리)의 불확실성
다자 조정자형	WIPO	비교데이터·중립 플랫폼 공공재 제공	구속력 있는 규범 형성 속도가 느림
조직 거버넌스 선제형	지식재산처(MOIP)	전담조직을 먼저 구축한 뒤 실행과제를 채움	발표 대비 대국민 실배치·내부 거버넌스 문서화 지연
저비용 실용 도구형	EUIPO·IP Australia·UKIPO	작지만 빠르게 무료 공개도구를 순차 출시	IP5 대비 절대적 자원·영향력의 한계

조직 거버넌스를 먼저 세우는 전략은 다른 어떤 관청도 시도하지 않은 지식재산처의 독자적 강점이나, 실제 성과(대국민 도구·문서화된 거버넌스·개방적 조달)로 전환되지 않으면 "선언은 빨랐지만 실행은 느렸다"는 평가로 남을 위험이 있다.

10.2 여섯 가지 교차 패턴

패턴	내용
① "AI는 보조, 최종책임은 사람"의 표준화	USPTO·EPO·EUIPO·지식재산처가 표현은 달라도 동일 원칙을 명문화 — 이제 AI 도구 배치의 최소 요건이 됨
② 발명자성 수렴, 실질기여 기준은 분화	"AI는 발명자 불가"는 8개+ 법역이 이미 수렴(3.1절). 다음 질문("얼마나 기여해야 하는가")은 미국이 정권교체로 18개월 만에 뒤집을 만큼 국제표준이 없음 — 먼저 명확한 기준을 내놓는 관청이 규범 주도권을 쥘 수 있음
③ 선배치·후정비의 함정	美 OIG(2025.4)·濠 ANAO(2026.6)가 독립적으로 동일 결론("도구는 이미 쓰이는데 성과지표·위험관리가 없다")에 도달 — 구조적 패턴
④ 데이터자산 보호모델의 분화	계약·판례형(미·EU) 대 등기형(중국) — 어느 쪽도 완전한 정답은 아니며 유연성·예측가능성의 트레이드오프가 다름
⑤ AI 브랜드명의 제네릭화 리스크	GPT·Grok·Sora·io 등 기술용어형 명칭이 EUIPO·USPTO·CNIPA에서 반복 무효화·거절 — 관청이 AI업계라는 이유로 심사기준을 완화하지 않음을 보여줌
⑥ 출원인측 AI 드래프팅의 이중압박	소수 벤처 플랫폼이 전세계 대형 로펌을 고객으로 확보(6.2절) — 접수 서류의 통계적 성질이 달라지므로 심사AI의 설계목표도 재정의 필요

10.3 지식재산처(MOIP) 격차 매트릭스

평가축	지식재산처(MOIP) 현황	수준	벤치마크
조직·전담체계 구축	지식재산처 승격(2025.10) + IP-AX 추진단(2026.5)	**상**	미·EU·중 어디에도 유사 사례 없음
AI 심사도구 배치	2021~2022년 이후 신규 대국민 도구 부재, 특허심사 GPT·AI에이전트는 개발단계	**중하**	USPTO(연쇄 파일럿), EUIPO·IP Australia(순차 무료 공개도구)
심사 가이드라인 정비	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3차 개정(2026.1), AI 발명·디자인 안내서 발간(2026.6~7)	**중상**	EPO(연례 개정), JPO(누적형 사례집)에 준하는 정비 속도
내부 AI 거버넌스 문서화	확인된 직원용 생성AI 사용지침·투명성 성명 없음	**하**	EUIPO(Communication 1/2026), IP Australia(AI 투명성 성명 2025.2)
조달·공급자 선정 개방성	사업자 특정 후 발표(워트인텔리전스, 솔트룩스 등)가 주된 방식	**하**	USPTO(RFI), UKIPO(사전 시장조사)
데이터자산 보호 법제	부정경쟁방지법 확장 적용 수준, 별도 데이터재산권 범주 없음	**중하**	CNIPA(데이터지식재산권 등기제도)
다자 무대 참여	IP5 도쿄 회의에서 IP-AX 계획 소개(2026.6)	**중**	WIPO AIII, IP5 NET/AI 로드맵 작업반

CHAPTER 11

지식재산처 IP-AX 전략 제언

10장 격차 매트릭스의 공백을 우선순위로, 검증된 타 관청 사례를 지식재산처(MOIP) 상황에 맞게 조정했다. 최종 실행 여부·방식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

1 대국민 공개 AI 도구를 최소 1개 이상 조기 출시

특허심사GPT·AI에이전트·IPNEX 중 준비도가 가장 높은 하나를 선정해, EUIPO·IP Australia처럼 "참고용, 최종책임은 사용자"라는 범위제한을 건 베타 버전으로 우선 공개. 2021~2022년 이후 정체된 실배치 트랙레코드 갱신이 초기 신뢰도에 중요.

2 AI 도구별 성과지표·위험관리계획을 배치 전 문서화

美 OIG·濠 ANAO의 공통 지적("도구는 쓰이는데 목표·위험관리가 없다")을 반면교사로, IP-AX 추진단의 'AI 윤리규정 연구' 임무를 **신규 도구 배치 전 KPI·위험등급·모니터링 사전 공표**로 구체화.

3 조달 전 공개 RFI·시장조사 절차 제도화

USPTO(RFI)·UKIPO(시장조사)는 도입 전 공개 의견수렴을 거친다. 지식재산처의 최근 사업자 선정은 확정 후 발표 방식이 두드러지는데, **조달 이전 단계의 공개적 시장참여 절차**로 순서를 앞당겨 투명성·공급자 다양성을 확보.

4 직원용 생성AI 사용 내부지침 제정

EUIPO의 Communication 1/2026(정보등급별 프롬프트 규칙+필수교육)을 벤치마크. 대외 심사가이드는 이미 앞서 있으나, **직원의 내부 AI 사용 규범은 공백** — 향후 내부 활용 확대의 전제조건.

5 "유의미한 기여" 판단기준을 조기 구체화, 정치와 독립적으로 유지

미국이 정권교체로 18개월 만에 발명자성 실질기준을 뒤집은 사례는 정치적 변동성의 위험을 보여준다. **국내 정치 일정과 독립적으로 안정적인 판단기준**(사례 예시 포함)을 조기 확정해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WIPO SCP 등에서 참고사례로 제시.

6 데이터자산 보호에 등기형 모델의 부분적 요소 검토

중국의 데이터지식재산권 등기제도(등기증서 4만 장+, 유통액 약 150억위안)의 핵심 아이디어 — 비공개 데이터의 존재·출처를 행정적으로 공증해 유통·금융화 촉진 — 를 전면 이식이 아닌 **한국 AI산업 구조에 맞춘 자발적·비독점적 '사실증명형'**으로 시범 검토.

7 AI 브랜드명의 식별력 심사기준 선제 정비

GPT·Grok 등 기술용어형 브랜드명이 EUIPO·USPTO·CNIPA에서 반복 무효화·거절된 사례는 한국 AI 기업에도 유사 리스크를 시사한다. **AI 업계 일반명칭화 판단기준**을 상표 심사실무에 명확히 반영.

8 **다자 플랫폼 참여를 '소개'에서 '규범 형성 주도'로 발전**

2026년 6월 IP5 도쿄 회의에서 IP-AX 계획을 소개한 것은 좋은 출발점. WIPO AIII·IP5 NET/AI 신규 작업반에 적극 참여해 **조직 거버넌스 선제성을 국제 규범 초안에 실질 반영** — "글로벌 AI-IP 규범의 룰메이커" 지향과 직결.

CHAPTER 12

결론

2020년 이후 6년간 전 세계 지식재산 관청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미국은 속도와 정치적 변동성을, 유럽은 판례체계의 정합성을, 일본은 로드맵의 예측가능성을, 중국은 새로운 재산권 범주 창설을 택했다. **단일 정답 모델은 없으며, 각국의 행정 전통·산업정책에 맞는 독자적 경로 설계가 합리적**이라는 것이 이 다양성이 보여주는 결론이다.

지식재산처(MOIP)는 승격과 IP-AX 추진단 출범으로, 비교대상 어느 관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직적 선제성**을 확보했다. 다만 이 보고서가 확인한 격차 — 대국민 공개 도구의 정체, 내부 거버넌스 문서화의 공백, 조달 개방성의 미흡 — 를 메우지 못하면 "선언은 빨랐지만 실행은 느렸다"는 평가에 머물 위험이 있다. 반대로 체계적으로 메워나간다면, 지식재산처는 조직 거버넌스의 선제성과 IP5 동료 관청들의 검증된 실행 경험을 결합해 스스로 표방한 **"글로벌 AI-IP 규범의 룰메이커"**에 실제로 다가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부록

데이터 및 방법론 노트

A.1 데이터 규모 요약

항목	내용
총 수집 항목	**305건** (2017-03~2026-07, 253개 날짜별 파일)
주제 태그	9개 TOPICS, 항목당 1~3개 부여
분석 대상	IP5(USPTO·EPO·JPO·CNIPA·지식재산처) + EUIPO·UKIPO·IP Australia·IPOS + WIPO + 각급 법원·정부기관

A.2 원문 재검증 방법

7개 리서치 트랙이 중요도 상위 항목(약 100건)에 대해 WebFetch 원문 재확인을 시도했다. 다음 도메인은 자동화 접근이 차단되어(403/타임아웃) 대체 방법(WebSearch, 2차 매체, r.jina.ai 리더 프록시)으로 교차확인했으며, 그래도 미확인된 세부사항은 추가하지 않고 아카이브의 기존 검증 요약만 사용했다:

도메인	기관	사유
jpo.go.jp	일본 특허청	다수 페이지 403
anao.gov.au	호주 감사원	타임아웃
euipo.europa.eu	EUIPO	일부 페이지 403
legal-patent.com / federalregister.gov / cipa.org.uk	-	일부 페이지 403
korea.kr	정책브리핑	일부 페이지 본문 미로딩

A.3 재확인 원칙

(1) 원문 URL fetch로 claim과 실제 일치 확인, (2) 확인 불가 시 사실을 지어내지 않고 명시적으로 플래그, (3) 아카이브 sum1/sum3 의존 항목도 최초 수집 시 검증을 거친 데이터이므로 신뢰 가능하나, 이 보고서의 구체적 수치·인용문은 신선하게 재확인된 항목에서 우선적으로 인용.

A.4 후속 개정 권고

이 보고서는 1회성 스냅샷이다. **최소 반기 단위로 통계(2장)와 최신 동향(3~9장)을 갱신**하고, 원문 접근이 막혔던 항목(A.2)은 시간이 지나며 재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재검증을 권장한다.